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2023. 12. 21.(목) 14:00~17:30

이룸센터 누리홀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2023. 12. 21.(목) 14:00~17:30

이룸센터 누리홀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일시 : 2023. 12. 21.(목) 14:00~17:3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소재)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프로그램

사회 :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시 간	내 용	
14:00~14:10 (10분)	개 회	◦ 인사말
1부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사회: 강곤 (인권기록센터 사이 기록활동가)		
14:10~14:40 (30분)	노법래 교수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 공공데이터, 미디어를 활용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14:40~15:00 (20분)	김준우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 당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15:00~15:20 (20분)	남궁수진 미디어감시팀장 정치하는엄마들	◦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 교육, 고용 등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 가족 및 관계자 경험을 중심으로
15:25~15:50 (25분)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 간	내 용	
2부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사회: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16:00~16:20 (20분)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 능력주의, 우생학과 장애인 혐오 생성 - 역사, 사회, 정치에서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
16:20~16:40 (20분)	강미영 교수 숙명인문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혐오와 미디어 -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구조에서 나타나는 장애혐오 - 미디어를 통한 장애혐오에 대한 대응
16:40~17:00 (20분)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예방과 대응할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 해외사례(규제방안 등),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17:00~17:30 (30분)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애써주신 김예지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정치인, 성소수자, 여성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집단입니다. 혐오표현의 경로 또한 넓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와 혐오를 주제로 각계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이 자리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 지속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맞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 사회 차원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에 참가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위해 공동주최로 힘을 모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최혜영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서주신 노법래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남궁수진 활동가, 김만권 정치철학자, 강미영 교수님, 조혜인 변호사님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혐오는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함을 넘어서 불쾌감과 기피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을 말이나 글, 상징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차별의 한 형태이며, 차별행위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온라인 포털, 카페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회의의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1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정치인, 성소수자, 여성 다음으로 장애인이 꼽혔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기준이 일부 제시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와 혐오표현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장애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 장애인 혐오표현이 없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모인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장혜영, 김예지, 용혜인, 강성희 의원님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1위가 장애인(18.9%)이었으며,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SNS 등 소셜미디어로 다양했습니다.

2023년 말, 수많은 언론이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들의 노동권'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있었으며, 의도와 무관하게 자극이 극대화된 언론 보도는 장애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생산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누군가를 '혐오해도 되는 자'로 규정해버리면 사회의 전체 구성원은 규정당한 이를 '혐오해도 되는 자'로 받아들일게 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마음대로 혐오해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있기에 더더욱 힘없는 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혐오표현의 양상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인 만큼 혐오와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동주최로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도래한 현실이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때로는 방치할 때 바로

얼굴을 드는 것이 ‘혐오’와 ‘차별’입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은 다수에 의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장애’를 가진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존엄함보다 언제나 ‘동정’과 ‘시혜’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위한 당사자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우리 사회도 변화되어 이동·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부족하지만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 ‘동정’과 ‘시혜’의 자리에는 ‘혐오’와 ‘차별’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그리고 올해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인 자녀의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게 다가옵니다. 장애인 혐오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권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치된 혐오와 차별은 더 큰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노법래 교수님과 OOO, 남궁수진 활동가님, 김만권 정치 철학자님, 강미영 교수님, 조혜인 변호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인사말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 8일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투쟁으로 만들어 온 인권 이정표가 현재 어딜 향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과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여전히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 일상 생활에서도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마저 혐오표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님이 연행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도 지하철 역사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장연 활동가들이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애인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탑승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쳐야 하는 현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투쟁을 '사회적 테러'라고 말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장애인 차별과 혐오적 표현의 확산과 조장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정치권의 망언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등, 언론과 미디어가 혐오표현의 확산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속도가 빠른 만큼,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마주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는 현상 아래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와 비장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분리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저와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토론회의 주제는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입니다.

현 정부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정치권력이 장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확장되고 있음과 더불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적대와 탄압의 대상으로 하는 혐오 정치가 대두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되짚어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으로 장애인(33.7%)을 선택하였고, 장애인이 혐오표현의 대상자이 되는 경우는 높게 나타나(24.0%)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한편, 주요 인권 쟁점에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직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10.9%p)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존과 거부의 정동을 우리 사회가 정립하지 못한 채 모순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의 문제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은 여러 사건이 일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향한 혐오표현들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미디어의 혐오·차별적 관점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자정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인식과 문화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이러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장애인을 집단화하고 대상화하는 과정을 정치 사안의 동력으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형성하고, 더 좋은 결실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적대와 혐오의 여론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지금도 여성과 성소수자는 물론 이주민과 난민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혐오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현안 토론회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의 양상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또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 귀중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잘 경청하여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입법과제를 시급히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부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 1.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19
노법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 2.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1) 33
김준우(서울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
- 3.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2) 45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장)

2부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 1.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63
김만권(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정치철학자)
- 2. 장애혐오와 미디어 85
강미영(숙명인문학연구소 교수)
- 3. 장애인 혐오 예방과 대응, 사회적 책임 101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1부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1부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노법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노법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혐오를 재생산하는 사고 과정에 대한 해부

노법래 (부경대학교)

발표 내용

- I. 댓글에 담긴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 연구 개요
 - 분석 방법
 - 분석 결과
- II. 토론: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 연구 개요
 - 분석 방법
 - 분석 결과
- III. 소결

2

I.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3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연구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혐오를 반복 생산하는 사고 과정의 주요 요소를 분해하여 혐오 표현의 기저에 놓인 잠재 구조(뼈대)를 포착하고 함.
- 이를 위해서 시의성이 높으면서, 혐오 반응을 가장 활발하게 촉발했던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한 반응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된 유튜브 댓글을 수집하였음. 유튜브는 현재 댓글 등에서 혐오 표현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미디어 가운데 하나임.
- 연구 목적을 위해 댓글에 대한 자연어처리를 통해 단어 간 연관구조, 하위 단어 군집에 대한 추출을 수행할 것임.

4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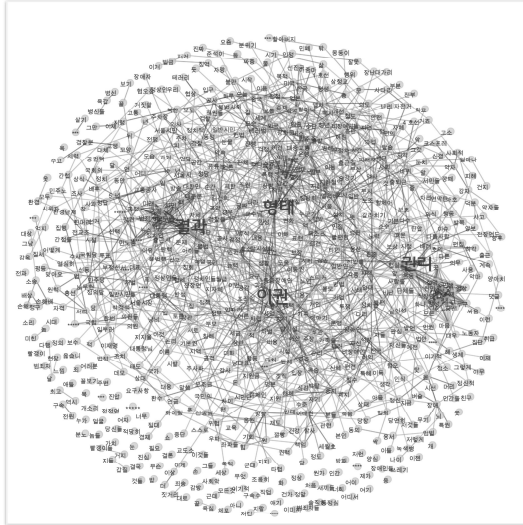
- 분석 자료
 - 분석 자료는 지난 2년 간 유튜브에 “전장연”으로 검색되는 모든 영상에 달린 댓글임. 자료 수집 시점에서 총 529개의 영상이 포착되었으며, 이 가운데 댓글을 차단한 일부 영상과 중복되는 댓글, 세 단어 이하의 짧은 글을 제거하고 총 15,854 개의 고유한 댓글을 수집, 정리
 - 수집된 댓글은 초기 정제 과정과 영태소 분해 과정을 거쳤음. 사전에 언어 모형을 활용하여 명백한 오타를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함. 아울러 단어 분해 사전에 대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단어 분해 오류 수준을 낮추는 작업을 병행하였음
-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연관구조를 그래프(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여 관찰하는 semantic network analysis를 수행하였음. 단어의 연관성은 댓글에 동시 출현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시각화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결정과정을 거쳤음.
 -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위 클러스터(sub-communities)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graph mining 과정을 수행함. 본 분석에서는 그래프의 연결 매개성(edge betweenness)을 활용하여 하위 네트워크를 포착함.

5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분석 결과

- 좌측의 그림은 15회 이상 출현한 단어의 모든 상관성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임
- 중앙에 높은 밀도의 단어 군집이 몇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탐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댓글에 담긴 혐오 표현이 몇 개의 주요한 조각들로 나뉠지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어간 연결 구조를 중요하게 매개하고 있는 단어들로서 “형태”, “결과”, “이권”, “권리”가 나타남.
- 이는 혐오 반응의 사고가 수 개의 단계적 과정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함. 즉, 장애인 시위의 성격에 대한 규정(형태), 시위의 주요 요인(결과), 행동의 목적(이권), 행동으로 인한 결과(“일반시민”의 권리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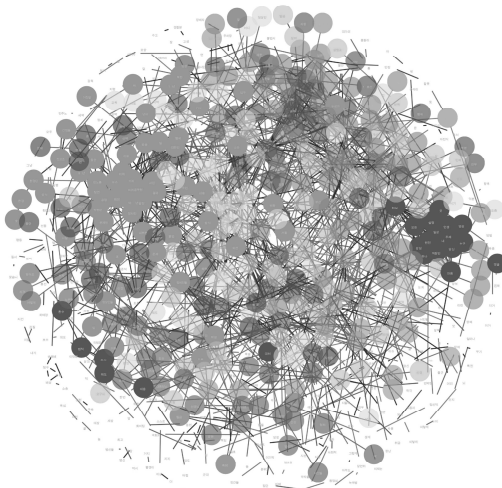
6

[그림] 주요어의 연관구조(전체)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분석 결과

- 좌측의 그림은 그래프 마이닝을 통해 단어 군집을 추출한 결과임. 같은 군집의 경우 색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단어는 특정 군집에 속하지 않는 경우임.
- 군집 추출 결과 총 10개의 하위 군집이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혐오와 관련된 주제가 명확하게 포착되는 6개의 군집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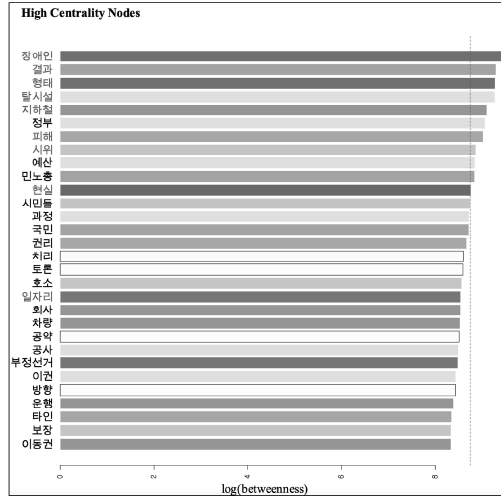
7

[그림] 그래프 마이닝 결과(전체)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분석 결과

- 좌측의 막대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에서 최상위 중심성(centrality)을 보이는 단어를 선별한 결과임.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에 상용로그를 취한 결과이며, 각 단어가 속하는 하위 군집을 별도의 색상으로 처리하였음.
- 전반적으로 볼 때 “결과”, “영태”와 같이 시위의 요인과 성격 규정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피해”, “일자리” 등은 댓글 속에서 출근길에 일하러 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 일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단어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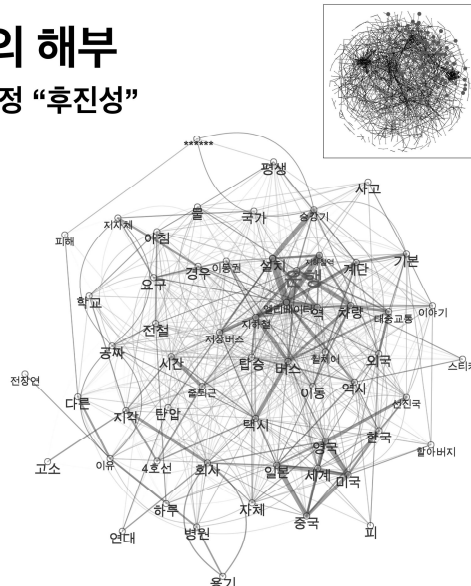
[그림] 핵심 중심어(전체)

8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1: 행위에 대한 규정 “후진성”

- 좌측의 그림은 단어 군집 1에 속하는 단어들의 연관구조임. 상단의 그림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군집의 분포를 제시한 것임.
- 해당 하위 군집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단어는 “은행”임.
- 이 군집에 속하는 단어들의 실제 댓글 구성을 살펴보면, 시위의 성격을 후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외국에서는 유래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나, 대중교통 방해 행위로서 시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임.
- 이는 시위의 배경과 주장의 내용보다는 언론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시위의 단편적 모습과 이미지에 치중하는 성격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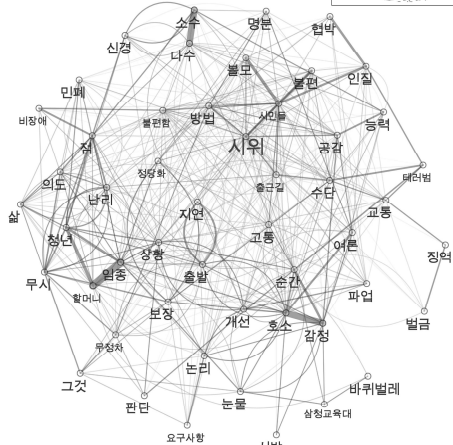
[그림] 단어 군집 1의 연관구조

9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2: 행위에 대한 규정 “폭력”

- 좌측의 그림은 단어 군집 2에 속하는 단어간 연관구조를 제시한 것임.
- 앞서 살펴본 군집1과 유사하게 군집2 또한 시위에 대한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군집1과 함께 가장 큰 하위 클러스터를 형성함.
- 군집2의 특징은 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적대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불편함”, “임중”, “난리”, “만폐”, “테러범” 등의 단어가 폭력적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바퀴벌레”, “삼청교육대”, “징역”과 반복되는 욕설 등이 분노의 감정을 유도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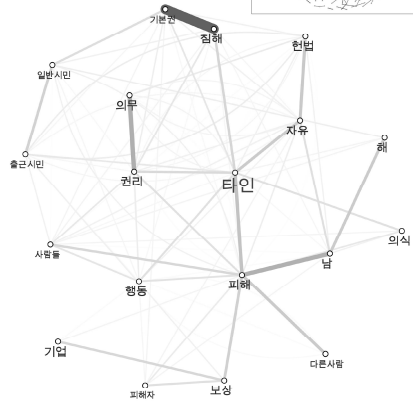


10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3: “선량한 일반시민과 장애인”

- 좌측의 그림은 단어 군집 3의 단어 연관구조임. 이 군집은 주로 장애인을 다른 집단과 대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됨.
- 장애인과 대립되는 집단으로 “출근시민”, “일반시민”, “다른사람”, “타인”을 상징하여, 장애인을 배제하는 생각을 담고 있음.
- 실제 댓글에서는 “일하지 않는”, “세금도 안 내는” 집단이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서 장애인을 규정하는 혐오 표현이 상당수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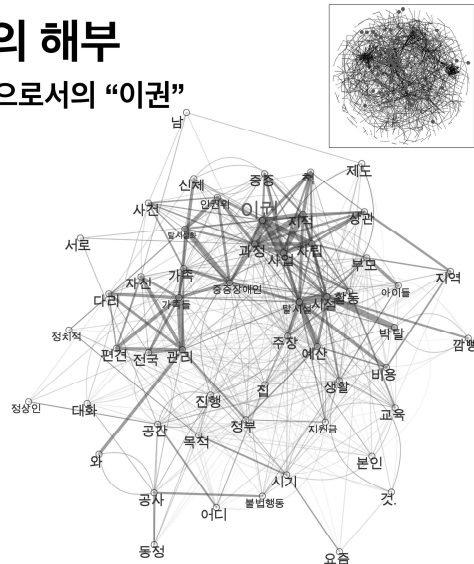


11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4: 행동의 동인으로서의 “이권”

- 좌측 그림은 단어 군집4에 속하는 단어의 연관구조를 제시한 것임.
- 이 군집에서 가장 중심도가높은 단어는 “이권”임. 해당 군집은 장애인 행동의 주요 동인을 장애인의 이익 추구, 관련 예산 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 부분적으로 탈시설화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댓글에 포함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 시위를 이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논의가 다수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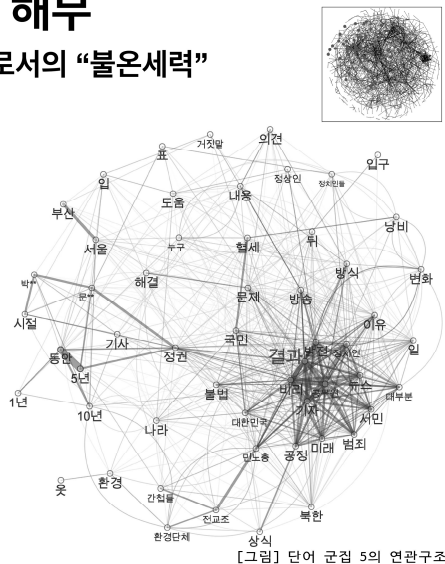
[그림] 단어 군집 4의 연관구조

12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4: 행동의 맥락으로서의 “불은세력”

- 좌측의 그림은 단어 군집4에 속하는 단어 사이의 연결 구조를 제시한 것임.
- 가장 높은 중심도를 가지는 단어는 “결과”로서 해당 군집의 내용은 장애인 시위를 유도한 주요한 힘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음.
- 지난 정권과 관련된 표현, 전교조를 포함한 시민 단체, “북한” 등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공무원”은 이런 배후조직에 의해 추동된 행위로 말미암아 공공부분 종사자들이 임들어안다는 논의와 연결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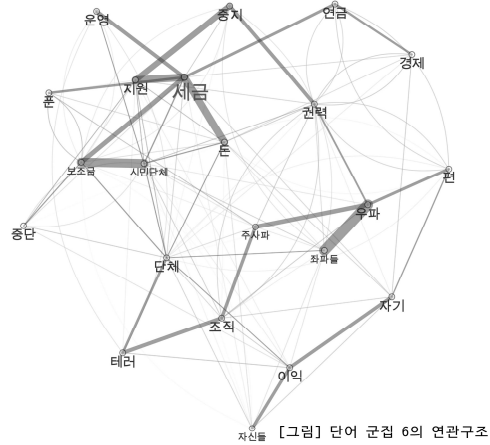
[그림] 단어 군집 5의 연관구조

13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생각의 조각5: 대응으로서의 “지원 중단”

- 좌측의 그림은 단어군집6의 단어 관련 구조를 제시한 것임. 해당 군집은 포함되는 단어의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음.
- 이 군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착되는 단어는 “세금”임.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테러” 활동과 같은 행동에 쓰이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장애인 혐오 반응의 해부

결과 정리

맥락	동인	방식	결과	대응
불은세력	이권	후진적 폭력행위	고통받는 일반시민	지원중단

- 지금까지의 살펴본 혐오 표현에 담긴 주요 생각의 조각들은 “맥락”, “동인”, “방식”, “결과”, “대응”에 대한 것으로 이 요소들은 일련의 혐오의 사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불은세력으로부터 추동된 이권을 추구하는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의 흐름임. 이권 단순하고 왜곡된 시도가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변주와 과정의 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혐오 표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5

II. 토론: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16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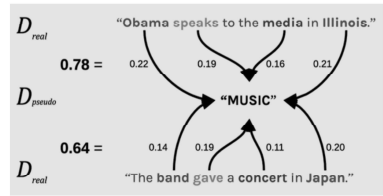
연구 개요

-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통”과 그 표출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본 토론의 목적임.
- 분신은 삶의 마감에 대한 선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면서, 울분과 고통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지님. 이에 토론에서는 분신 사건의 20년간의 흐름을 짚고, 그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된 흐름을 추적하고자 함.
- 2001년 부터 2018년까지 중복, 단신 등을 제거한 분신 관련 최종 분석 대상 기사문은 5,389건임.
- 기사문 내 불필요한 정보(특수 문자 등)는 전처리 과정에서 제거하고 형태소 분해를 진행.

17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분석 방법: 개념 간 거리 측정



$$\sum_{i=1}^n T_{ij} = d_i, \forall i \in \{1, \dots, n\}$$

$$\sum_{i=1}^n T_{ij} = d'_j, \forall j \in \{1, \dots, n\}$$

$$T_{ij} = \begin{cases} d_i & \text{if } \text{argmin}_c c(i, j) \\ 0 & \text{otherwise,} \end{cases}$$

$$T'_{ji} = \begin{cases} d'_j & \text{if } \text{argmin}_c c(j, i) \\ 0 & \text{otherwise.} \end{cases}$$

$$RWMD_{ij} = \max \left(\min_{T>0} \sum_{i,j=1}^n T_{ij} c[i, j], \min_{T'>0} \sum_{j,i=1}^n T'_{ji} c[i, j] \right)$$

$$CMD_D = \left(\frac{RWMD_D - RWMD}{\sqrt{\frac{\sum_{D=1}^n RWMD - RWMD}{n-1}}} \right) \time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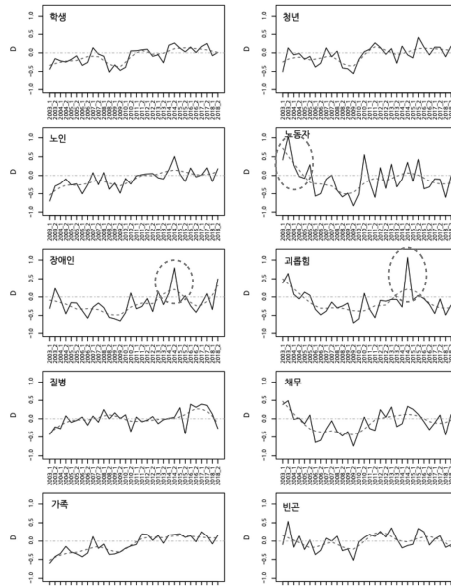
- Concept Mover's Distance(CMD). (Stolz & Taylor, 2019)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분석결과: “분신” 사건의 개념별 거리 추이

- 좌측의 그림은 반기별로 분신 관련 기사문에 담긴 8개 개념과의 관련성 변화를 추적한 결과임.
- “분신” 사건의 흐름에서 특정 개념과 거리가 갑작스럽게 관련성이 높아지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분신 사건이 누적된 고통의 극적인 표출형태라는 점과 관련됨.
- 관련 집단을 놓고 볼 때, 2003년 전후에는 “노동자”와 관련된 분신 사안이 주요하게 포착되나, 2014년을 전후하여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지점이 나타남.

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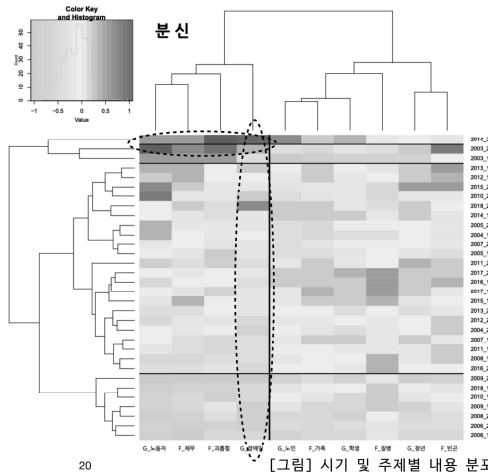


[그림] 시기에 따른 내용 구성 변화 추이

고통의 표출로서의 분신

분석 결과: “분신” 사건의 시간과 개념 공간에서의 분포

- 좌측의 그림은 주요 개념과 시기별 관련 구조를 히트맵의 형태로 표현한 것임.
- “분신” 사건이 특정한 시기와 개념에 집중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 2003년, 2014년 하반기에 “분신” 사건의 빈번하게 포착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노동자”와 후자의 경우는 “장애인”과 높은 연관성을 보임.
- 종합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과 울분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와 장애인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최근 시점에서 장애인 관련 사건이 주요하게 포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

[그림] 시기 및 주제별 내용 분포

소결

-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장연 시위에 대한 혐오 댓글을 중심으로 장애인 혐오 표현의 내용을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생산하는 잠재적인 일련의 사고의 틀을 발견할 수 있었음. 혐오에 대한 대응과 옹호 전략 마련은 혐오 사고를 구성하는 논리 구조와 확대 방식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야 함.
- 특히, 댓글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을 시민 밖에 존재하는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여론 호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함.
- 분신 사건으로 표출된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고통의 몸짓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정장연 시위에 대한 이해는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임.

21

감사합니다.

1부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피해 사례 1)

김준우(서울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1)



김준우(서울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이 추운데 집이나 있지 뭐 하러 나왔어?”

시작에 앞서, 비장애인에게 먼저 묻고 싶다. 여러분은 출근길에 이 같은 질문을 생면부지의 누군가에게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과연 들어본 적은 있는가? 던지는 반말로도 모자라,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밀도 끝도 없는 조소와 눈 흘김이 마치 덤처럼, 혹은 3중 세트처럼 따라붙는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천 원짜리 지폐 던지고 가는 사람, 혀를 내두르며 공공연히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곳곳하게 살라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밥값이라고 먹은 밥값을 끝내 거절하는 식당 주인, 동물원 동물 구경하듯 가던 길 멈추고 안 보일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보는 시민, 휠체어가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인 양, 휠체어 등받이를 무심코 딛석 잡는 승객,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면전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사라지는 시민들까지... 장애인 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이 사례들 중에 비장애인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는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은 있는가? 사회적 인식이 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저변에 깔린 장애인에 대한 동정도, 그래서 정당성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푸는 선의도, 반대로, 장애인이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배척도 저항도 장애인 당사자에겐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혐오적이다.

2023년! 밖으로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국내에 비준된 지 꼭 15년이 되는 해이다. 협약의 주요 핵심 가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인 동시에 장애인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꾸준히 알려왔다.

또한 안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식 시행된 지 15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운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출범으로 시작되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¹⁾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이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차별과 혐오로부터 권리를 구제받고, 법을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밝혔듯,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이유 없는 낯선 인식과 시선, 근거 없는 동정과 시혜는 법의 존엄성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이에, 전신마비 장애 당사자인 토론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무수히 겪는 장애인 차별과 혐오 경험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물과 기름 같이 분리된 듯 겉돌아 구조적인 사회모순으로 나타나곤 한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모순을 바로잡고자 꿋대 세워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부의 무관용 강경 대응 앞에 현장의 거친 몸싸움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해결점 없이 그렇게라도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 냈다면 그 성과는 적거나 작지 않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묵인되거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위험한 사례들을 활자화하여 노출시키고자 한다. 막강한 법의 권한으로도 비장애인 뒤에 숨어 있는 혐오와 차별을 찾아내는 데는 역부족인 이유이다.

[사례 1.]

지하철에 오르자 불쑥 어린아이가 달려와 멈추더니 얼굴과 휠체어를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휠체어 여기저기 만지는 아이 모습을 빙그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나타난 아이 엄마가 작은 체구의 아이 몸을 낚아채듯 안고 자리로 가 앉았다. 아이 엄마의 커다란 손은 찰싹찰싹 소리가 나도록 연신 아이의 손바닥을 닦아내고 있었다.

“에잇, 지지! 지지! 더러운데 저런 거 만지지 말랬지? 자꾸 장난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알겠어? 에잇, 지지!”

사실 개인적으로 장애 자체는 주변에서 짐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성화된 통증이나 경직은 주기적으로 처방받는 약으로 다스리면 된다. 혼자 불가능한 일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 때문에 작금의 사회적 기본 안 전망은 장애가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 1.]에서처럼, 영문도 모른 채 더러운 이물질이나 벌레 취급당할 때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과 삶의 전의마저 상실시킨다. 남녀노소 상관없다. 인간 존중은 고사하고, 장애가 아직도 장애인 개인의 문제인 양, 업보인 양 사회적으로 격리 처분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보호자의 손아귀에 강압적으로 붙잡혀 손바닥이 붉게 변하도록 털리고 닦이면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용기 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만져본 휠체어가,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혹여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악의 무리로 인식되진 않았을까? 아이에게 찾아가 그게 아니라고 이해시키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 현장에 있던 장애인 당사자는 이미 혐오스러운 아저씨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사례 2.]

하루에도 수차례씩 지하철을 이용한다. 인파 속을 뚫고 이동해야 하는 러시아워 때는 매번 적잖이 긴장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휠체어 바퀴로 누군가의 발을 밟아 골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보도나 지하철 안에서 휠체어 아래를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온갖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다.

이 상황에 못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어김없이 말을 툭툭 던진다.

“좁아터진데 비킬 곳이 어딴다고 비집고 들와요? 못 들어가요. 다음 것 타욘!”

“타는 것까지 뭐라 못하겠는데, 타더라도 좀 한가한 시간에 타면 안 돼요?”

“복잡한 출근 시간에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한 시민의 불평불만으로 시작된 말은 전염병처럼 삼시간에 주변 사람으로 번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장애인은 시민들의 화살촉 같은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위의 [사례 2.]에서도 나타나듯, 똑같은 시민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 눈에 장애인은 시민의 범주에 있지 않았다. 의도한 바 없이 장애인 당사자는 그들의 판단에 의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근길 대열에도 끼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의 해석대로라면, 휠체어를 버리고 타던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탑승하려면 그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해 지하철을 타 줘야 하는 주변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빗발치는 원성과 눈초리는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 되는 거였다. 현장의 관계자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채 노골적인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가히 폭력적인 차별을 당해야만 했다. 여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²⁾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³⁾ 등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전시성에 불과한 법을 위한 법이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차별금지(제5조)⁴⁾도 홍보성이긴 매일반이었다.

국가를 위한 법 장치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장치인지 당사자는 모호하다.

-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차별금지(제5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사례 3.]

점심때가 지난 식당 내부는 테이블 하나에만 손님이 있을 뿐, 한눈에 봐도 한산했다. 일행과 때를 놓쳐 배고팠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들어섰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인이 문 앞에서 휠체어를 막아선 채 손사래를 친다.

“어허어허어허! 나가요, 나가. 자리 없어요. 다 꽉 찼어요.”

문밖으로 밀어내려는 주인의 불쾌한 반응에 빈정이 상했다. 빈자리는 뭐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대뜸 벌써 다 예약이 됐단다. 더 따져 물으려다가 무안해하는 일행에게 결례인 것 같아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기분은 망칠 대로 망쳐 있었다.

그때,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커플이 식당 안으로 유유히 들어갔다. 그들을 향해 인사하는 주인은, 좀 전에 휠체어 장애인인 나를 대하던 그것과는 동전 앞뒷면처럼 달랐다. 놀랍게도 최상의 친절과 상냥함을 갖춘,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흠잡을 데 없는 프로적인 모습으로 돌변했다.

장애인 당사자라면 식당 입구에서 [사례 3.]과 같은 문전박대를 한 번쯤은 경험했음직하다. 이날, 치욕스러운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조작하고 자리를 벗어났다. 그 식당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가게여야 했다. 젊은 그 커플은 예약 손님이어야만 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나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조작이었다.

믿기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직접적 차별 사례이지만,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는다. 빈번히 벌어지는 위의 사례에서 장애인은 그저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운 좋게 식당에 들어갔다 하자. 활동지원사가 식사 지원하는 광경을 신기한 듯 뺨히 쳐다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밥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도 거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찌다 동료들과 음주할 기회가 있어서 술을 주문하면 모 가게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하듯 묻는다.

“장애인이 술도 마셔요?”

주인은 무슨 대단한 충격이라도 빠진 표정으로 주문한 술을 놓고도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린다. 대수롭지 않게 컵에 빨대를 꽂고 술을 마실라치면 이젠 다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다.

쇠사슬처럼 연결된 일상에서의 혐오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시선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건,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이라는 점이다. [사례 3.]에서처럼, 한낱 종잇장 같은 친절과 불친절 사이에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은 없다. 집 밖으로 나와 아스팔트 위를 기고, 삭발을 하고, 노숙 농성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현 정부에서 장애인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사례 4.]

경로석에 앉아 계시던 시민 한 분이 일어나 지폐를 찢러 주며 한마디 하신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찢찢.”

극구 사양하자, 이번엔 꾸짖듯 말씀하신다.

“어허, 어른이 주는 돈 거절하면 못 써요! 어여 넣어 뒤편.”

주변 탑승객의 시선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어찌할 바 몰라 창밖만 바라봤다. 그런데 또다시 말을 걸어오는데 끝이 없다.

“어쩌다 장애인이 됐어요? 어디서 살아요? 누구와 살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요? 휠체어는 언제부터 탔나요? 휠체어가 비싸 보이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국가 보조금 받아 산 거죠?”

어르신의 쏟아지는 질문에 눈 감고 있던 시민들까지 힐끔거렸다. 대충 답하고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 역에서 하차했다.

“힘내요. 알았죠? 찢찢.”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듣고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진심에서 우러난 선의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당사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보다 악의적이고 혐오적인 말도 없다. 평범한 비장애인 시민에게 이유 없이 덱석 돈 찢러 주지 않는다. 먹고 입는 것을 함부로 묻지도 않는다. 생판 모르는 비장애인에게 호구 조사

하듯 캐물었다간 경찰에 신고당하기 십상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장애인이라서 더 힘들 거란 생각,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오판이고 오류이다. 굳이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 요청하기 전엔 모르는 체하는 것도 예의이고 상책일 때가 있다. 대다수 장애인에겐 그렇다.

3. 맺는말

2021년 12월 6일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재개정을 위한 지하철 선전전이 2023년 12월 중순 현재, 490일 차를 넘어섰다. 그 사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47차에 걸쳐 진행했었고, 177명의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삭발을 감행하며 연대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철도안전법⁵⁾을 내세워 벌금과 퇴거 조치만을 경고하였고, 급기야 해당 역사 무정차로 대응했다. 전장연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매일 아침 8시 출근길 선전전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최근 장애인권리예산 중, 장애인 이동권인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통과를 위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현장의 활동가를 불법 연행하는 무차별적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⁶⁾에 장애인은 없었다. 장애인 권리 탄압이고, 혐오를 조장하여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이 사회의 수치스러운 민낯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정당한 외침을 22년간 외쳐왔다. 아침 선전전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이 겪었던 단 10분의 불편을 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 평생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

5)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헌법 제2장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왔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가 갖는 법 앞의 평등에 관해 정부는 언제까지 장애인을 배제시킬 것인가?

‘장애시민 불복종’에서 변재원은,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를 정의하는 법률 조항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은 권리는 법제화되기 전까지 언제나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사회의 모순을 직시한 누군가의 용기를 통해 권리의 개념이 탄생하고, 적당한 이름이 붙고, 모습을 갖추고, 기존 질서와 갈등이 발생할 때 비로소 중재안으로서 법률이 세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⁷⁾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모순을 직시한 존재는 법체계에 위협을 느껴 문제 제기보다는 순응을 택하고, 기존 현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사회체계 이론의 향상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능이라 하겠다.

한편 ‘장애시민 불복종’에서는, ‘권리가 법률에 앞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법에 구속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파하며, ‘법체계에 순응하는 인간은 그 너머의 것을 상상할 수 없고, 그러한 합법은 지배자가 구성한 불평등한 조화의 모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리가 법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의 외침은 어찌면 의무이겠다.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 곧 투쟁’이라는 변재원 활동가의 일설에 그 의무감은 책임감의 무게를 더 신는다.

“나는 혐오의 대상인가?”

이 자문에 자유로운 자, 자유롭지 않은 자 누구인가?

7) 변재원(2023), 장애시민 불복종, 참비

1부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피해 사례 2)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장)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 2)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장)

1. 들어가며

비장애중심주의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 격리, 더 나아가 혐오는 부끄럽지 않은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이초 사건이후 건강한 반성과 개선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사회적 분노를 혐오로 소비하는 사회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용인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언론과 언론의 소비, 재생산자들이 무분별하게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겼다는 평가는 적확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관련상의 신상은 비밀로 하여야 함에도 아동학대특별법을 어렵지 않게 위반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신문윤리강령을 무시하는 보도들은 언론윤리위 제소가 필요했습니다. 미디어감시팀은 아동학대특별법과 신문윤리강령을 참고하며 위법 행위와 윤리강령 위반보도 들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빙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30일 1차로 언론윤리위 독자불만제기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2차, 3차 언론윤리위 제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피해사건개요

2023년 7월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각종 기사와 댓글에 장애 혐오가 만연
2023년 8월 말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부모연대 및 흥유희 무의 이사장 등 언론의 장애 아동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 지적
2023년 9월 초 ~ 10월 중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언론윤리위,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행정적 절차를 위한 기사 아카이빙
2023년 10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은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 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피고발인: 조선일보 편집인 외 18개 언론사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보도기자)
2023년 10월 25일	신문윤리위원회 (1차 22개 언론사 외 2,3차에 걸쳐 계속 진행예정),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12개사)에 심의신청 접수
2023년 11월 10일	방송 심의 신청 (MBC, KBS, SBS, EBS의 총 10개 프로그램 심의 신청)

3. 형사고발

3-1.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의 근거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의 근거판례

- 1)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 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
- 2)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
- 3)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 4)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령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자 등을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피해자 등으로 축소해 해석·판단하지 않음.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분과정의 한 종류일 뿐인 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일반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
- 5) 검찰이 같은 법령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해 불기소처분을 한 부당성과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이라는 법문언을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해 아동보호사건 상 피해아동 등으로 축소해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 6)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적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에 처분

3-3.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내용

-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5조 제2항 위헌제정(2021헌가4 헌재결정문, ‘아동학대행위자 보도금지조항’의 위헌 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 행위자의 피보호자로서 이미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대외적 식별이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판시
- 2) 동 결정문은 또한 “한편,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아동 측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더라도 언론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도해선 안 됨을 적시

3-4. 신고 매체(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1.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일보, 살구뉴스, 뉴스어몽, 아티브뉴스 / 10개사
2. 방송: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KBS 뉴스광장, JTBC 뉴스룸, MBN 뉴스7, 채널A 뉴스A, TV조선 뉴스9, 연합뉴스TV, YTN뉴스 / 10개사



사진 1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한 언론사 20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3.10.06)

4.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4-1.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인들 스스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1957년 언론윤리강령을 제정, 1961년 신문윤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채택함. 온·오프 신문과 통신을 감시하는 언론자율기구.

- 1) 일간신문, 뉴스통신(종이지면신문)⁸⁾:강원도민일보사,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신문 등 130개사
- 2) 온라인신문⁹⁾:한남일보, 한스경제, 한라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138개사

8) 정관 제 33 조 (서약서 제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준수를 찬동하는 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은 소정의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서약문 게재)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 및 통신사는 제호말에 매호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라는 서약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9) 정관 제 34조 동일

4-2.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심의요청 서약사

메일경제,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국제뉴스, news1,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남도일보, 아시아투데이, 스포츠경향, 이데일리, 뉴시스, 대전일보, 동아일보 총 22개사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심의요청

4-3.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심의요청 사항

제1조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같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3조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

제5조 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7조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11조 ① (명예·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독자발반 제기서

제보자	정지하는엄마들	제보일시	2023년 10월 25일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연락처	010-5023-6967		
제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윤리강령 제5조(영예훈장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③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회의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④ (사생활 관련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제하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배려를 갖지 않아야 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 보도준칙 ④ (성별보도 금지) 범죄, 폭력, 동성애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안 되며 계속해서 다뤄서도 안 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보장 ④ (범죄와 관련한 가족 보도)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된 이는 가족의 신임을 침해하지는 안 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보장 ① (명예·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당판정 보도, 왜곡보도, 공방과 부당한 보도, 저명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경계해야 한다. <p>내용 위 취회된 22개 사자사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p>		

1	대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장애인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실명, 사진, 학교명 등 인적 사항 및 해당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검찰 소장, 신고고지 학대 행위자가 주도받은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를 공개하여,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을 위배함. - 용인 장애인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인들의 인형을 분별없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인들이 보일 수 있는 인치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등 장애인들을 위협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문로 보도하고,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할 이들을 격화 할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2항, 제4항, 제5항을 위배함. - 용인 장애인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가족, 사다나구, 하지, 최러더, 분노에 증실한'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인들이 학대 피해 아동의 인형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7조 제6항, 제12조 제4항을 위배함.
2	제2차대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사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4	사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5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7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8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9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정지하는엄마들, 신문윤리위 보충 자료 - 기사별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조항

신문사	기사 제목·내용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조항	기사 링크
1	대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mk.co.kr/news/spot/1078986
2	제2차대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mknews.com/1198/1198191

사진 2 정지하는엄마들,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구체적 윤리강령 위반사항 지적 (23.10.25)

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5-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출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이용자상담 등 자율규제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신력 제고로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산업의 지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참여서약사 863 개사

5-2. 인터넷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른 심의요청 서약사

위키트리/뉴데일리/데일리안/더팩트/매일안전신문/아주경제/엑스포즈뉴스/스타뉴스/osen/이데일리/뉴스엔미디어/투스타뉴스 이상 12매체

5-3. 인터넷신문윤리실천요강 중 심의요청 사항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①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① (선정성의 지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절 권리 보호

제10조(인격권의 보호)

⑥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https://jdsn.co.kr/news/view/106553837928235 6. 아주경제 https://www.aajnews.com/view/20230827213906590 https://www.aajnews.com/view/20230827203205582 https://www.aajnews.com/view/20230828130810954 https://www.aajnews.com/view/20230829142943923 7. 엑스포츠뉴스 https://www.xsportnews.com/article/1752292 8. 스타뉴스 https://www.starnews1094.com/stview.php?no=2023072623510515476 9.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2166660 1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8408635705680&mediaCodeNo=257&cutlnkChk=Y 11. 뉴스엔미디어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308280556062110 12. 종스타뉴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8790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사/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이들을 자제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캡처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p>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서 중 상기 12조의 대책이 옹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기사심의규정,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종교,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출판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라디오를 통하여 방출할 수 있다'는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등 외의 경우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주소명, 전학 사실과 원학 학교 위치, 신고자의 사진과 개인적인 메시지는 물론 신고자의 사진과 실명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 해당 기사들은 제목과 내용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분명하게 자제히 표현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 고가의 위체자를 구입했다는 등 사건의 분질과 관련 없는 내용들과 누리꾼과 학부모의 의견이라며 신고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내용으로서 보도의 균형성유지 항목을 위반하였습니다. - 선정 보도의 지양, 악자 보호와 차별 금지 위반과 차별적 표현 금지 위반하였습니다. - '장애표 알고 있다'는 장애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는 차별적 표현이며 장애아동의 특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및 매체의 도움을 위해 '인터넷신문 이용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상담의 대상은 저희 위원회 관할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매체의 기사와 광고입니다.

신청 전에 서약서 [링크\(http://inc0001.cafe24.com/inc01/inc02.php\)](http://inc0001.cafe24.com/inc01/inc02.php)에서 해당 매체의 자율심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총합상담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휴대전화	사무국 010-2540-0420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 피보자의 개인정보는 상담내용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신청일	2023.10.25	
대상명	위키토리/뉴데일리/데일리인/더팩트/매일경제/인터넷신문/아주경제/엑스포츠뉴스/스타뉴스/osen/이데일리/뉴스엔미디어/투스데뉴스 이상 12매체, 장애아동자신을 보도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기사심의규정,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매체에 대한 심의요청	
제 목	1. 위키토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3472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3547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3586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3620 2.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1/2023080100069.html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31/2023083100289.html 3. 데일리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67379/?sc=Naver 4.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33107.htm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37884.htm 5. 매일안정신문 https://jdsn.co.kr/news/view/1065540847442689	

사진 3 정치하는엄마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구체적 윤리강령 위반사항 지적 (23.10.25)

6. 방송통신심의 신청

6-1. 심의신청 방송프로그램

-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7월 27일, 19:40 방영)
- MBC 뉴스투데이 2부 (2023년 07월 28일, 06:25 방영)
- KBS 대전 뉴스7 (2023년 07월 31일, 19:00 방영)
- KBS 뉴스광장 (2023년 08월 02일, 06:00 방영)
- SBS 뉴스브리핑 (2023년 07월 28일, 14:00 방영)
- SBS 8 뉴스 (2023년 07월 31일, 19:50 방영)
- SBS 나이트라인 (2023년 08월 02일, 00:00 방영)
- SBS 뉴스브리핑 (2023년 08월 01일, 14:00 방영)

EBS 뉴스 12 (2023년 08월 02일, 12:00 방영)

EBS 뉴스 (2023년 08월 02일, 18:40 방영)

6-2. 방송심의규정 위반 조항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한 문제는 생략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협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좀 더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했을 언론입니다. 그 대신 앓다투어 장애아동의 도전적인 행동을 맥락 없이 열거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만 몰려든 것입니다. 즉, 언론의 책임 의식은 사라진 채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결과를 낳는 차별 행위에 해당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채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사생활·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장애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론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여론이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율적인 심의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윤리 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한계를 보였습니다. 수많은 매체에 비해 심의기구의 규모는 작고, 심의결과도 주의, 경고에 그치는 등 심의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자율심의기구를 처음 만들었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규모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매체들 스스로가 마련해가기를 바랍니다.

2부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2부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김만권(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정치철학자)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 장애인 혐오를 중심으로³⁾



김만권(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정치철학자)

1. 사회기본구조와 차별과 혐오의 관계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평등하지는 않다. 한나 아렌트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정치공동체다. 인간은 정치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평등’을 부여받는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어떤 정치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평등’한 존재가 될 다른 기회를 부여받는다. 공동체로부터 그 기회를 부여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공적 영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차이가 다원성으로 평등화되는 공간에서 행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치공동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루소의 말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슬에 묶이게” 되고 만다.

그렇기에 한 개인이 태어난 곳이 어떤 사회기본구조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전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사회기본구조가 혐오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동료시민들과 필수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혐오와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허용하는 사회에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리게 된다.

10) 이 발표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발표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과제인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에서 발췌 및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제에서 혐오의 개념, 연구의 틀로서 능력주의를 제시한 이는 발표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혐오를 담당할 연구자는 법학박사이자 법무법인 ‘도담’에서 일하는 김정환 변호사임을 밝혀둔다. 마지막에 제시되는 장애인 혐오 및 혐오 전반에 대응하는 정책이 고려해야 할 지침으로서 원칙은 참여연구자들 전원이 세미나를 통해 합의한 결과임도 미리 알려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종교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 거부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 옆의 누군가는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차별 앞에 모욕과 굴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국가의 적절한 제도적 보호 밖으로 배제되어 ‘추방된 자’로서 외연에 포함되는, 조르주 아감벤의 표현을 빌자면 ‘호모 사케르’의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조차 통과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사회 역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2. 개념정의

1) 혐오, ‘감정’이 아닌 ‘문화와 구조’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를 낙인찍어 비인간화하고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태도와 그에 기반을 둔 실천을 의미하는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지만, 혐오가 중요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였다. 이후 혐오는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으며 ‘무엇이 혐오인지’ 그 의미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혐오’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혐오가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함’이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혐오는 누군가를 보편인간으로, 누군가를 그 보편인간의 타자로 설정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이자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혐오를 특정 집단을 향한 감정의 옹고 그른 상태로만 본다면, 혐오에 내재해 있는 특정 집단을 보편적 인간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배제하는 정당화의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다수는 혐오를 감정의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에 내재해 있는, 타자를 주변화하고 이를 통해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문화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혐오를 감정의 상태를 넘어 차별과 배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혐오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비드 이스턴이 지적하듯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혐오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발표문은 이런 혐오가 기반을 두는 중요한 가치에 능력주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지나치게 많은 권위가 능력주의에 부여되었다는 의미다.

2) 능력주의란?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정상인, 보편인이란 관점에서 가장 쉽게 주변화하여 배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들을 향한 선입관은 쉽사리 그 선입관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 편견으로 발전되며, 그 편견은 차별과 배제를 내재화한 혐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여성과 장애인 및 성소수자들이, 지구화의 조건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혐오의 정치를 더욱 부추기는 담론이 능력주의와 공정성이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지위, 부, 명예 등을 신분이나 타고난 배경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발상이다. 신분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던 이 발상은 매우 공정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능력에 따라 계층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상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능력 있는 자는 대우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능력주의의 발상은 공정성과 쉽게 결합한다. 공정성 역시 늘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일수록 공정성을 표방한 ‘자격의 논리’의 섭리론은 능력주의와 함께 강화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자격의 논리’로서 공정성 담론과 능력주의가 혐오의 정치에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다수를 무능력한 자로 취급하면서 무기력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로 만들어 모욕을 안기는 경향이 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최초로 알린 마이클 영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능력을 결정적 요소로 보는 만연한 인식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 다수가 무기력한 나락에 빠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학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사회에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돌리게 되며, 결국 무력해지면서 더더욱 확실하게 절망에 빠진다.”¹¹⁾

11) 영, 『능력주의』, 197쪽.

실제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능력주의를 상위 5%의 이데올로기로, 미국에서 능력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니얼 마코비츠는 『엘리트 세습』에서 상위 1%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묘사한다. 이처럼 능력주의가 상위 1% 혹은 5%, 넓게 잡아 20%를 위한 이데올로기(20 대 80 사회)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능력주의는 사회적 다수를 무능력한 자로 간주한다.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능력주의는 사회적 다수를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자’로 취급하며 모욕을 안기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없는 자를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자로 취급하는 발상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실제 능력의 지배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서열화하여 그 서열에 따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능력주의가 사회 내에서 1% 혹은 5%, 넓게 잡아 20%의 이데올로기라 할 때, 능력주의는 자연스럽게 제한된 기회 안에 진입하는 일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지위와 자원 분배에서 제한된 기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곧 특권의 획득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갑질 현상은 이런 특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의식의 한 단면, 앞서 보았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진태원이 『을의 민주주의』(2017)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에선 이런 갑의 특권화에 반대하는 을이 자신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서 병과 정을 거느리고, 병은 갑과 을의 특권화에 반대하면서도 자신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을 거느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능력에 따른 서열화가 이뤄지고 그 서열에 따라 차별과 혐오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소위 ‘계단화된 공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단화된 공정성 아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 빈자들을 그 밑바닥에 자리 잡는 경향이 높아진다.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공격하는 주된 논리를 쓰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민주 정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 여성할당제, 지역 균형선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이 대다수의 정책이 공정성 차원에서 역차별이라는 공세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능력주의라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는 모든 소수자들을 무임승차자로 취급하며 이들을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2-3년 간에 새롭게 등장한 혐오의 현상으로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과 능력주의

1) 장애인 차별의 특성

“혐오는 누군가를 보편인간으로, 누군가를 그 보편인간의 타자로 설정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이자 구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 연구에서 장애인 혐오와 차별에 대하여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반드시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혐오의 사전적 정의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기반하여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 차별은 이 연구의 다른 주체들과는 매우 다른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다. 즉 장애인 차별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잘 배려해주겠다’라는 혐오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선의’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놀이동산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를 탑승하고자 하자 에버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에버랜드는 놀이기구가 고장 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장애인으로 인한 비장애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버랜드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에버랜드 가이드북상의 ‘시력이 있어야 탑승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에버랜드는 항소하였는데 에버랜드의 항소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012년 30,64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숫자는 2019년에는 29,662명으로 겨우 1,000명이 안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식사와 외출은 완벽하게 통제된다. 즉 ‘감옥’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시설의 존재 이유는 ‘장애인의 안전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이다.

2) 능력주의와 장애인 차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예 - 시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하고 놀이기구가 고장나면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것과 장애인은 시설 안에서 생활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감정적 ‘혐오’에 기반한 판단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장애인을 약자로 인정하여 배려하겠다는 비장애인의 강자로서의 배려가 느껴지는 경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선의에 기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라는 관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점에서 능력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능력주의가 가지는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펴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대략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37.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다.¹²⁾ 이는 2017년 조사의 37.7% 에서 겨우 0.2% 향상된 수치에 불과하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수준 조사에서 중학교 이하가 1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너무나 높은 수치이다.¹³⁾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장애인을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시켜 교육시키고 비장애인들만이 모여 교육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리 교육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능력의 차이를 전제로 두고 이루어진다.

교육은 이런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시장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무시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농아인에게 신입사원의 채용자격으로 토익점수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토익점수를 요구하는 채용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채용에 토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익 시험은 그 시험 점수의 절반이 ‘듣기평가’이다. 농아인은 그 평가를 치러낼 방법이 없다. 모두에게 공정한 토익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채용에 차별이 없다는 판단은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적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극심한 차별이 되는 것이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이다. 이러한 간접 차별은 장애인에 관련하여 능력주의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 작용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잘 보여준다.

1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7쪽 이하 참조.

13) e-나라지표 국민교육수준 학령별 인구분포 참조.

4. 우생학 - 능력주의 관점에서의 장애인 혐오

1) 우생학은 현대에 살아있는가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넘어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기도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전제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과 혐오의 근저에 있는 우생학의 사회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현대 과학은 ‘유전자의 세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전자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우생학(eugenics)은 그 명칭의 변화¹⁴⁾에도 불구하고 배아연구, 유전자 치료, 신약개발, 유전학적 선별 검사등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나찌 시대의 우생학을 잠시 살펴보면 나찌는 ‘유전적 결함을 가진 자손의 예방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전 인구의 5% 가량이 단종 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였고 ‘혼인보건법’을 통해 유전성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결혼 자체를 금지 하기도 하였다.¹⁵⁾ 우리나라 역시 한센인에 대한 강제 낙태 및 불임 수술을 하는 등 우생학에 기반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¹⁶⁾

현대에 와서도 산전검사를 통한 낙태가 모자보건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등 여전히 우생학적 판단에 기반한 차별은 존재한다. 우생학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선천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을 능력이 취약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어 유전학적 발전을 토대로 한 생명 공학 상품을 통해 더 나은 비장애인 태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낙태와 유전학적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발생학자 로버트 에드워즈 교수는 유럽 인간 생식 및 발생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1999년 연례총회에서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곧 부모의 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품질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로버트 에드워즈 교수의 위 선언은 단적으로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관점을 보여준다. 비장애인은 열등하고 우리는 더 나은 품질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선언. 노동력이 품질이 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현대사회는 이렇게 장애인을

14) 대표적인 예로 1972년에 미국 우생학회는 사회생물학회(Society for Study of Social Biology)로 명칭 변경한다.

15) 우생학의 역사에 대하여는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94면 이하 참조.

1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2166 판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갑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 참조.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 기반을 우생학이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2) 우생학에 대한 반성

우생학에 대한 반성에 대해 한양대 의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신영전이 ‘추천사 또는 참회문’이라는 제목의 글로 “의사 공중보건 전공자로서 선배들이 저지른 참혹한 과오들에 대해 먼저 머리숙여 참회하고자 한다.”라고 시작한 글의 내용은 경청할만하다. 그는 책 추천사에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생물학자 네이션 렌즈의 말대로 인체에는 딱히 할 일 없이 존재하는 뼈들이 수없이 많고, 망막은 거꾸로 달려있으며, 우리 유전체의 내용물 중 대부분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혹시 미래에 지구상에 완전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생론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파멸적 논리 체계이다. 따라서 취약성, 개방성, 유한성 같은 신체의 구성적 특징을 ‘퇴치해야할 위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 토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주장은, 인간을 자기파멸로 인도하는 작금의 우생세에서의 마지막 희망 구호이다. 따라서 반우생학적 실천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온존을 위한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이다.”¹⁷⁾

우리의 우생주의적 욕망 - 나의 자녀가 더 우수한 인재가 되길 원하는 - 에서 장애인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환원되어 인식된다. “우생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개인들”에게 장애인은 무능력한 사람일 뿐이다. 위에서 신영전이 이야기하는 반우생학적 실천은 가능할 것인가? 우생학 자체가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생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제 신약개발 등에 있어 우생학이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생학이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오는 차별적 판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생학이 가지고

17) 신영전, ‘추천사 또는 참회문’, 장애와 유전자 정치, 앤커·툼 세익스피어 지음, 김도현 역, 그린비, 2021, 13쪽 이하.

온 반인권, 집단 학살의 역사¹⁸⁾를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근본을 정확히 인식한 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변화 등을 포함해 우리는 장애인 혐오에 기반한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균열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생학에 대한 반성을 이론헌하고¹⁹⁾ 실천적으로는 현재 장애인이 당면한 문제인 등급제와 시설 문제, 이동권 등에 대하여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3)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

앞서 살펴본 우생학에 기반한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을 등급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즉 장애인 등급제는 그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관념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²⁰⁾ 그 외에도 장애인 등급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단순히 행정가와 안내자로 국한시키는 문제, 예산 편성을 쉽게 하는 제도로서의 역할, 장애인을 소극적 수동적 이용자로 한정시키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²¹⁾

즉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는 헌법적 시각에서 등급제는 그 시행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평등권 위반이자 기본권 침해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 환경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내용과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어 매우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서비스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18) 나치 장애인 학살(T4 Operation)은 장애인 집단 학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1939년 10월 나치는 훗날 ‘T-4 프로그램’이라 알려진 적극적인 장애인 학살(그들은 안락사라 불렀다)을 시작했다. 당시 한 시민이 시력 장애 등을 안고 태어난 자기 아이를 ‘자비롭게 죽여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나치 정부에 냈고 히틀러는 그 청을 수용한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7만 5,000명이지만 최대 20여 만 명의 장애인이 학살됐다.

19) 우생학에 대한 반성 및 우생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장애와 유전자 정치’, 앤커·툼 셰익스피어 지음, 김도현 역, 그린비, 2021. 참조.

20) 김동기,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1권, 2018, 90쪽.

21) 김동기, 앞의 논문, 90쪽 내지 91쪽.

7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없앴다. 즉 장애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의 6등급을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토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 1~3등급에게만 주어지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 장애인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증과 중증 2단계의 구분이 여전히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중증장애인을 기타 장애인과 구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2원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독일의 장애인법제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의 90%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정도로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²²⁾ 독일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장애인을 그 정도에 따라 구별지어 평가하는 것은 철저히 행정편의적인 것이며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전제로 정부의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 민간과 장애인, 공공과 장애인간의 유기적 연결,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급제는 전향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넘는 사회적 모델을, 재활 패러다임이 아닌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전문가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즉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기 위하여 손상중심의 장애개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장애개념으로의 변화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의 강조, 서비스 결정 및 제공과정에서의 참여 강조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지향해야 하며²³⁾ 그러기 위해 등급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22) 김대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2018, 26쪽 이하.
 23) 김동기, 앞의 논문, 96쪽.

5. 장애인과 시설 - ‘탈시설’의 의미와 방향성

1)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지만 장애인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능력주의적 관점은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한정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충북지역 민관합동 시설 조사, 미등록 장애인 거주시설 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컨설팅 등 여러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자들을 만났을 때 경험을 소개 하며 아래와 같은 시설장들의 발언에 주목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으면 우리 시설이 만들어진지 15년이 됐는데 여기 계신 300명 중 나가신 분이 한 명 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시설 밖으로 나가면 다 성폭행 당해요.”

장애인거주시설은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도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소와 같은 역할을 한 대표적인 예는 형제복지원을 들 수 있는데 그곳에서의 처우를 인용하면²⁴⁾ 다음과 같다.

“복지원 내 우리들의 용모는 뽀뽀 민, 아주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매주 중대장이 용모와 복장을 시찰하기 때문에 컷가에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짧게 밀어 버린다. 수동 ‘바리깡’ 으로 깎기 때문에 머리털이 씹혀 뿔히기도 했다. 복지원 아이들의 특징은 머리에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있었다. 우리들의 의복은 하얀색 팬티와 러닝셔츠, 파란색 내지 짙은 감색 추리닝 한 벌, 그리고 검정 고무신이 전부였다.(중략) 복지원에서는 안되는 게 없다. 안 되면 기합 받고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와 똑같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서 작업에 동원된 수용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구타해서 죽여 버린 사건과 박인근 원장이 국고보조금 중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을 마구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수는 513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모두 굶주려 죽거나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이는 1986년 이전의 일이며, 이 기록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남긴 기록이 아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는 3천

24) 한중선 외, 살아남은 아이, 문주, 2012, 27쪽 이하.

25) 오마이뉴스, “그곳에서 513명이 굶어죽고 맞아죽었다 - 수사감사도 분노한 김용준 '형제복지원' 판결”, 2013. 1. 29.

5백여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정신장애인도, 사회 불량자라 일컬어 지던 빈곤층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사회 속의 가장 큰 차별이 그 사회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제도 운영은 그 출발에서부터 격리와 분리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한다 하여도,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이 들고,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생활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할 수밖에 없다.

2) 탈시설을 위한 제도적 과제

탈시설은 그저 시설을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시설에 대한 제도적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중앙에는 현재 별도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의 주거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반적 정책이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방도 전반적으로는 중앙과 별로 다르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인 정책(체험홈, 자립주택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상이나 예산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으로 앞으로 대상과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소득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것 또한 부양의무제 등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대상이 한정적이며 그 수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행의 장애연금 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립생활 수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형성 및 조정의 권한을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은 없을 것이다.²⁶⁾ 따라서 소득정책에 관하여는 법문의 규정과 관계없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26) 전광석, 장애인정책과 입법방법론, 저스티스 137호, 2013, 120면 이하 참조

셋째 개별적 필요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와 연결되는데 각 장애인의 수요에 맞춘 처우가 필요하다. 현재 자부담의 부과 비중, 최고시간의 제한 등으로 최종증장애인이 자립생활 혹은 탈시설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탈시설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공익 이사로 활동하는 김정하 이사장은 지금까지 시설에 지원해온 정부의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면 충분히 탈시설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고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탈시설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²⁷⁾

6. 장애인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1) 장애인 혐오가 발생하는 일반적 경향

장애인 혐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장애인혐오가 감정의 상태라기보다는 장애인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배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혐오가 발생하는 방식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장애인혐오는 ‘극히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혐오의 사전적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을 배려하겠다’는 선의로 포장되어 발생한다. 이런 선의는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런 무능력을 편견으로 하여 장애인을 탈개성화,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둘째,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보는 이런 관점의 근대적 근원은 우생학이다. 비장애인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급제는 바로 이런 우생학적 관점에서 의료적으로, 나아가 정책적으로 모델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관점이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보기보다는 의료적 모델로, 장애인의 자립이 아닌 재활이 목표로, 당사자 주위가 아닌 전문가주의로 귀결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7) 프리웰은 구 석암재단의 비리 사태에 맞선 이용 장애인과 직원의 비리척결 운동,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개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와 같이 비리가 있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을 무능력한 이로 보는 관점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분리하여 특수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편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효과를 낳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시설화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서비스 이데올로기 아래 작동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편견, (특히 발달)장애인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능력주의 관점이 내재해 있다.

넷째, 장애인등급신청, 신입사원채용 등 국가와 사회의 수많은 제도가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간접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우리 일상의 언어에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일상의 언어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재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문화적 편견과 구조적 편견이 담겨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정당화의 근거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더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저상버스 도입)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해석마저 낳고 있다.

2) 장애인 혐오에 대응하는 정책 원칙

본 발표문은 이런 장애인 혐오가 생겨나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다음 세 가지 원칙이 관련 정책에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1) 탈우생학의 원칙

첫째, 탈우생학의 원칙이다. 우생학은 사람을 철저히 능력주의로 평가하는 사고의 산물이다. 배제의 형식으로 사람을 가르고 사람의 노동력을 점수화하여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한다. 능력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우생학에 대한 신화를 부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정치적 생명이자 존재론적인 삶을 살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엄숙하게 선언한 것이 바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자 그에 따른 기본권 목록이다. “우리가 본래 존엄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서로를 대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서로를 대우할 때 비로소 존엄이 구성된다”는 김원영의 말은 의미 깊다. 김원영, 실격당한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71쪽.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위하여 우생학적 관념을 배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탈등급화의 원칙

둘째, 탈등급화의 원칙이다. 이는 탈능력주의와 탈우생학에서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다. 등급제는 필요적으로 의학적인 진단과 판단에 기반하여 사람을 능력으로 구별한 것이다. 탈등급제 운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심지어 “사람의 몸은 고기가 아니다!”라고 외친다. 장애인 등급제는 그 존재 자체로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우리는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이 장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경증 중증 장애등급 또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등급제는 없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 및 행정지원의 편의를 위한 것뿐이다. 사회복지행정은 본디 가두관료제(街頭官僚制, street-level bureaucracy)는 대민 접촉 당사자 행정 공무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라 하여 그 대상자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의 변화. 그 시작에 등급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3) 탈시설화의 원칙

셋째, 탈시설화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복지에 대한 여력이 없던 과거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패러다임 자체가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는 더이상 복지라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맞춤형 전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러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지적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혐오이자 차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의 독방이다. 그러한 안전을 안전이라 할 수 있는가? 탈시설은 시설 자체를 전부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탈시설은 장애인 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며 탈시설이 기조가 된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부 운용될 수 있고 운용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사유화 되어 있고 관련 종사자의 취업 등이 연계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탈시설을 통한 일자리 상실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 탈시설로 인하여 폐쇄 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관련 해고 문제가 가장 큰 법률 이슈가 되고 있다.

탈시설의 추진이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설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때 궁극적으로 탈시설이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과 체육시간에 소리가 나는 공으로 축구를 해보았거나 농아인과 음악시간에 수어를 쓰며 춤을 추어 봤다면 그러한 경험만으로도 비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래된 능력주의적 편견에 기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너무 오랫동안 분리하여왔다. 2022년에도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20년 전에 하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탑승 및 하차를 반복한 장애인들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894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이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 투쟁에 대하여 현재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와 “다르다”는 판단, 너희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배제.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다고 판단하는 그 근본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혐오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정책 원칙

마지막으로, 일종의 참고 사항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빈곤한 자를 향한 혐오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정책 지침을 제시한다. 장애인 혐오에 대응하는 원칙들 역시 이 세 가지 큰 원칙에 속한다.

(1) 환대(안전화)의 원칙

협오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지침은 환대의 원리이다. 이 환대의 원리는 협오받는 대상들의 안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환대의 원리는, 인류가 전쟁이라는 악을 없애고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한 『영구평화론』(1795)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최초로 제안한 원칙이다. 이 지침서에서 칸트는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타국의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는 발상을 제시하며 이를 ‘환대’(hospitality)로 호명하였다. 칸트는 이런 환대의 태도가 인류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성이 명령하는 ‘권리’라고 말한다. 이런 환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낯선 이들이 또 다른 낯선 이들의 땅에서 적대 없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특정 영토 내에서 비시민의 권리이자 우리 시민들이 모든 비시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이런 이방인의 권리로서 환대의 원칙을 변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 처럼 취급받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대의 기준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 안에 삶을 누리는 모든 이들로 보고 이들이 적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상성을 내세우는 보편인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가르고, 그 정상성이 포함하는 보편인간에 속하지 못할 때 이방인으로서 때로는 추방된 이로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빈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런 환대의 원칙은 능력주의가 만드는 경계 역시 무력화한다. 실제 한 사회는 정치적·경제적·도덕적 능력의 유무, 능력의 뛰어난과 그렇지 못함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가르고 추방한다. 조르주 아감벤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배제시켜 포용하고 있는 자들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 라고 부르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주 흔한 존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대의 원칙은 이렇게 호모 사케르 마냥 정치경제적으로 한편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2) 비분리(다양성)의 원칙

낯선 이들에 대한 안전화의 보장이 환대라면 낯선 이들을 우리에게 친숙한 동료로 변모시키는 원칙이 바로 비분리의 원칙이다. 이 비분리의 원칙은 기존의 배제된 집단을

낮선 이,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을 넘어 우리와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비분리의 원칙 아래서는 안전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서 타자의 인정과 누구나에게나 좋은 삶이 강조된다. 이런 이유로 비분리의 원칙 아래 기준에 배제된 집단이 정치공동체 내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다양성을 지닌 집단으로 변모한다.

이런 비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등한 동료로서 타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다. 비분리의 원칙은 타자를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런 인정 하에 동료로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다르지만 어울리는 동료로서 인정될 때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타자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1958)에서 밝히고 있듯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인정으로부터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호네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정서적 욕구의 분출과 충족을 가로막는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적 권리의 유보나 불인정, 사회적 연대에서의 배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무시’나 ‘모욕’으로 이해되며, 이는 ‘분노’라는 심리적 반작용을 일으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을 추진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고 말한다.²⁸⁾ 인정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정체성은 자아를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 삶에서 의미있는 생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든다. 동등한 동료로서 타자의 인정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고, 경제적 활동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고, 문화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궤적에 맞는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가게끔 만든다. 타자를 다르지만 함께 어울리는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비분리의 원칙은 동료시민을, 더 나아가 인권을 지닌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보호하거나, 감시하거나,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탈사법지배(탈법만능주의)의 원칙

마지막으로 제시할 원칙은 탈사법지배의 원칙이다. 영어로 juristocracy라 불리는 사법 지배는, 정치적 문제마저 법으로 환원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이른다. 법을 일종의 만능

28) 악셀 호네프(2011), 『인정투쟁』(서울: 사월의 책), 16쪽

해결 열쇠처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법치는 다르다. 권리 확보는 정치와 법치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탈사법지배의 원칙은 소수자의 권리를 해결하는 방식을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경계하기 위해 본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종래에는 법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귀착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법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을 제어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차별금지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제공·이용이라는 4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혐오표현이나 괴롭힘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다. 다시 말해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오히려 차별과 혐오에 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영역을 인식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유롭게 이런 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법만으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만연한 차별과 혐오일수록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런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법은 상징적 규범으로 작동할 뿐이다. 특히 법의 핵심이 규제와 처벌이라면 이것으로 사회 전반에 널려 있는 차별과 혐오를 제재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처벌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차별과 혐오는 법적인 처벌과 규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규제가 중심이 되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환대를 통한 안정성의 가치, 동등한 동료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울리는 비분리의 가치가 실현되는, 즉 가치 실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탈법만능주의의 원칙은 특히 소수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활동가와 정책가들에게 필수적이라 본다.

2 부

장애혐오와 미디어

강미영(숙명인문학연구소 교수)



장애혐오와 미디어



강미영(숙명인문학연구소 교수)

장애인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장애혐오는 종종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내면화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완전한 육체에 대한 불안으로 등치되기도 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진화적으로 내면화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불완전한 신체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므로 장애인은 투사적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학자 톰 셰익스피어 역시 무능력과 비생산성을 내세우며 육체의 한계를 공격하는 인간의 심리에는 죽음과 몸의 불능에 대한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음을 “부정의 쓰레기통(dustbin of disavowal)”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1997: 217). 하지만, 장애혐오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정 시대와 사회가 지니는 장애를 향한 서로 다른 태도와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애혐오는 담론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담론이 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지식과 권력의 융합체임을 생각할 때, 각 사회는 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고유의 담론 형성의 과정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미디어는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과 담론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을 조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정상성 이데올로기(Ideology of Normalcy)와 장애불평등 혹은 능력주의(Ableism)에 의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디어가 장애에 대한 간접 경험과 인식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졌다. 1985년 어빙 케네스 졸라(Zola)는 “장애에 관한 묘사: 미디어에서의 은유, 메시지, 수단”(Depictions of Disability: Metaphor, Message, and Medium in the Media)에서 미디어를 장애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규정하였고, 1992년

콜린 반스(Colin Barnes)는 「무력화하는 이미지들과 미디어」(Disabling Imagery and the Media)에서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미디어 조직이 장애인에 대해 모든 점을 제대로 묘사해 줄 때 완화될 수 있다”(Zola, 1992: 19)고 하였다. 실제로, 미디어가 조장하는 장애혐오 담론은 장애와 장애인을 대상화함으로써 혐오감을 만들어 내는 기호의 집합을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상화란 상대를 한낱 물건이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Nussbaum, 1995: 257). 중요한 것은, 타인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개념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대상화가 혐오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특정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혐오가 아니라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모두 혐오가 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장애혐오의 장애를 범주화하고 특정 속성에 귀속시킴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차별의식을 양산하는 것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상대적인 회피와 집단적 범주화 모두를 의미한다. 장애 혐오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체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집단의 특징을 토대로 형성하는 부정적 여론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범주화와 대상화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규정된 특성이 개개인의 인격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일관되고 단순한 존재로 축소된다.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애인의 목소리와 정체성이 비장애인의 시각을 통하여 해석되면서, 장애인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체로서의 의식과 권리를 잃게 된다.

은유로서의 장애재현

장애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은유와 담론이 된다. 특히, 미디어 상에서 장애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대적 비가시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재현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 언어표현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장애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장애는 부정적 타자의 은유가 된다. “미디어는 우리가 장애를 접하는 주요 지점이자 장애가 영향받고 지배당하는 주요 도구”(엘리스, 2020: 37)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미디어는 의사의 전달이나 정보의 교환을 위한 수단을 의미하며, 언어, 음악,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인간의 상호관계와 행동양식을 만들어내고 제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미디어를 통한 장애의 재현은 인간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장애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조종한다.

미디어 상에서 장애는 일차적으로는 언어적 표현, 관용구, 속담 등을 통해 재현되고 대상화된다. 귀머거리, 병어리, 언청이, 저능아 등의 신체장애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병신’이나 ‘불구’와 같은 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병신 자식 효도한다’ 등의 속담, 나아가 ‘눈뜬 장님’이나 ‘결정장애’와 같은 속담이나 관용구는 언어의 관습적이고 맹목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의식 바깥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장애를 극복했다’는 중립적 표현들도 장애를 질병이나 개인적 비극처럼 이겨내거나 헤쳐나가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내포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표면적인 무해성이나 중립성으로 인해 유아나 청소년들이 읽는 도서 혹은 온라인상의 웹문화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공공연히 공공과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관련 표현과 속담들의 문제는 장애표현을 넘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확장될 때 나타난다. 장애인 차별 표현은 장애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타자에게 그 왜곡을 강요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 표현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닌 인간성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해 점검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장애차별 표현은 언어와 화자 사이의 책임의 문제를 촉발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 ‘장애자’가 널리 쓰였고, 1988년 패럴림픽 때도 ‘장애자경기대회’로 썼으나, 1990년대에 장애자에 낮춤의 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장애자’의 ‘자’가 높 자(者)를 사용함에 따라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게 이유였지만, 사실상 장애자가 “애자”라는 줄임말로 사용되면서 폄하의 의미로 수용되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기회였을 뿐 실제로 장애자라는 언어 자체에 폄하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자에 쓰이던 높 자는 폄하의 의미가 없는 배우자, 학자, 소비자 등의 일반명사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경이나 장님, 맹인 역시 중립적 표현이지만 폄하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금기시되고 시각장애인만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장애자를 부정적 단어로 만든 것은 단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의 장애 혐오감이었으며, 해당 표현을 폐기시키는 것은 그 혐오감의 확인이자 회피이다. 대중들의 혐오감 자체를 드러내고 문제시하는 대신 오염된 언어의 사용을 금기시하는 방식은 인간이 아닌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를 넘어

장애에 대한 혐오감을 허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는 마음의 문제이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혐오감은 특정 언어가 사라지면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 낸다. 주체가 말하는 언어는 관습적이며, 인용적이다(버틀러, 2016: 84). 장애를 혐오하는 주체는 그 기원이 아니라 호명을 통해서 언어로 생산된 존재이다. 장애차별적 표현을 억제 하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은 장애혐오의 기원을 그러한 표현을 배태시킨 사회 전체의 책임과 그 언어를 유포하도록 한 집단 의식이 아닌 화자 개인이나 언어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서사를 통해 장애를 재현할 때, 미디어가 장애인을 개별적 존재가 아닌 차별적 집합으로 존재하도록 만들고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방식은 은유적이고 은밀하다. 미디어가 장애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장애라는 소재가 전체 주제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는 더욱 인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언니 때문에 거친 인생을 살게 된 이영옥(한지민 분)이 박정준(김우빈 분)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이때 장애인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해주는 은유로 활용된다. 그들의 사랑이 넘어야 할 장애로서 장애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깊고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아버지(류승용 분)의 지적장애는 딸을 향한 부성의 깊이와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 장애인이 서사적 보조 역할을 이행 하는 과정은 선량하고 순수한 희생자의 이미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고착화가 가지는 문제점은 장애에 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애인의 실존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나아가 분노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장애인이 보조적 역할이 아닌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서사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왔다. 한국의 장애영화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장애인을 빈번하게 등장시키는데, 자폐이지만 마라톤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말아톤>), 아스퍼거 증후군의 의사가 뛰어난 술기를 발휘하거나(<굿닥터>),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비범한 피아노 실력을 보여주기도(<그것만이 내 세상>) 한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류의 반향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역시 자폐이지만 뛰어난 암기력과 응용력으로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가히 공상에 가깝다. 이는 존 밀튼, 베토벤, 스티비 원더와 같은 장애인의 천재 서사를 원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화에서의 장애의 재현은 표면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에 관한

이중적이고 왜곡된 의식을 양산한다. 슈퍼장애인(Supercrip)의 이미지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비장애 몸과 정신의 우월성을 더 강화하며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각각의 장애인을 영감의 상징으로 둔갑시킨다(클레어, 2021: 44). 이러한 재현은 장애가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결핍이라는 인식에 더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중매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한 장애 재현 역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긴다. 롤(League of Legend) 게임에 등장하는 리신(시각장애인), 헬블레이드의 세누아(정신장애인), 솔리드 시리즈의 라이텐(사지절단 장애인) 등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술실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왔다. 미디어는 이러한 게임 캐릭터들에 대해 “남모를 아픔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게이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임 속 캐릭터”라고 소개하기도 한다(조 영준, 2020:2). 이러한 캐릭터의 등장은 게임의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장애를 친숙하게 만드는 표면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장애 캐릭터는 의수나 의족의 착용을 통해 막강한 힘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애는 언제나 쉽게 과학기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장애차별을 확산하기 때문이다(문 채영/심 재웅, 2023: 23). 특히 이러한 장애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의료공학기술을 통한 신체력의 증강이라는 기호를 통해 장애는 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미디어상의 장애 재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장애인을 정형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 캐릭터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선과 정의를 대변한다. 대개의 경우 장애 캐릭터는 선한 역할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장애인도 주요 인물인 경우에는 선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형성을 기존의 장애혐오를 추동하는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유포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옹호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무화하는 인물묘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사와 수동성의 이미지에 갇힌 장애인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약자를 위한 관용은 차이에 대한 적대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함으로써 심리적 혐오감과 원한감정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강자의 위치를 부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원한과 억압된 공격성을 낳는다"(브라운, 2010: 64). 결국, 각종 미디어를 통한 장애의 재현에는 장애의 비가시성과 장애의 왜곡 사이의 모순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양가

성이 존재한다. 모든 장애의 재현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를 보이게 하는 힘과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며, 따라서 장애의 재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이 요구된다.

의료과학의 발전과 미디어 상의 장애혐오

다양한 의료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건강과 정상성이 공동체, 국가, 개인의 우월함, 행복, 도덕성을 상징한다고 간주하며, 건강과 정상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소유하거나 잃을 수 있는 자산으로 여김으로써 장애와 질병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포는 장애가 있는 신체를 혐오하게 하고 장애 없는 신체와 미래를 지속적으로 꿈꾸도록 만든다. 「치유로서의 폭력」의 저자 김은정은 유예와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 담론을 ‘접힌 시간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장애인에게 과거와 미래만을 허락하는 접힌 시간성은, 장애가 있는 현재를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부정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폭력적인 ‘진보’의 서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2022:23). 한국사회가 의료지식과 기술을 통해 접힌 시간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들여다보자.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가 일련의 성과를 보이던 시기에, 희망에 찬 뉴스보도, 황우석을 영웅시하는 다큐멘터리, 황우석의 연구 성공을 기념하는 음악회,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공청회 등은 모두 현재의 장애를 외면하고 미래만을 내다보며 장애에 대한 접힌 시간성을 구현하였다. 황우석의 배아줄기 세포 복제 성공을 기념하여 방송된 2005년 7월 31일 KBS <열린음악회>에서의 서사는 의료기술에 대한 낙관이 현재와 현실의 장애를 부정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음악회가 시작되자, 척추장애자인 강원래가 휠체어 댄스 공연을 펼쳤고, 그 이후 황우석은 무대에서 “지금 강원래씨가 추고 있는 휠체어 댄스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장면이 되도록 온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휠체어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강원래의 도전과 가치는 부정되고, “국민이 함께 갈” 대의적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변화되고 기다려야 할 대상으로 변모한다. 강원래가 장애를 갖기 이전의 정상적 과거와 치료를 통해 정상화된 미래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장애를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는 미래 낙관은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소외시킨다.

의료기술 발달이 강조하는 장애 없는 미래는 정상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기술철학자이자 장애학자인 애슐리 슈

(Ashely Shew)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 낙관주의가 파생시키는 장애차별주의를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이라고 부르고, 이를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비장애중심주의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손상된 몸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그 개인에 기술적 지원이나 교정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것을 혹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장애인들이 실제 삶에서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느끼고, 그것과 상호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Shew, 2020: 34).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말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지만, 음성언어가 정상이고, 수어는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이라는 차별적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실제로 KT에서 2020년에 제작한 ‘마음을 담다’라는 광고는 인공지능 기술로 청각장애인이 목소리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수어는 비정상이고 음성언어만이 정상이라는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정상성의 이데올로기는 의족과 휠체어를 대체할 의료기술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로봇, 엑소스켈레톤에 관한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9월 22일자 중앙일보는 “로봇입고 성큼성큼... 하반신 마비 20년 만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로 인해 장애를 가진 몸이 “장애를 딛고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하였다. 각종 미디어가 이와 유사한 수사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그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의 구분, 나아가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있는 자본력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은연중에 직립보행이 정상적인 것과 모든 장애는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엑소스켈레톤이 각종 의료공학적 기술을 통해 하반신마비장애인에게 정상적으로 걷도록 강요하는 것은 장애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의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교정하라는 압력이다 (Oliver, 2009: 45). 이러한 비판은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장애차별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엑소스켈레톤 기술에 내재하는 직립보행만이 정상보행이라는 전제는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보다는 정상성(Normalcy)에 방점을 뒀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성과 열등함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의료과학의 발전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원리와 맞물리면서 장애는 수치화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불행으로 인식되고, 노동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소외는 가속화된다.

수치화된 능력, 생산성, 노동력 등의 가치는 장애인의 무가치성을 대변하는 증거로 작동한다. 자본주의가 인간을 그저 마케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듯 기술이 지배하는 의료의 시대에 인간은 그저 하나의 이상 수치로 환원되고, 그의 삶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맥락은 지워진다(김 현아, 2023: 261). 이러한 맥락에서, 착상전 배아선별 기술(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이나 태아 유전자 검사 등의 유전공학기술은 불임과 낙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며, 자연스럽게 장애아의 낙태를 증가시켰다. 장애 임신에 대한 태아선별검사와 낙태의 문제점은 그것의 이면에 장애인의 삶은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능력주의적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가 비극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최우선시하기 보다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대어 손쉽게 능력주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태도는 그러한 제도를 당연시하는 가운데 더욱 강화된다(Davis, 1995: 165). 결국, 유전자 검사 및 선별 검사는 장애를 지닌 태아를 제거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강화될 수 있다.

오늘날 초음파검사, 산모혈청검사, 양수검사(amniotic fluid test)²⁹⁾ 융모막 융모생검(chorionic villus sampling, CVS)³⁰⁾ 등과 같은 유전공학기술을 통해 태아의 장애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를 선별적으로 낙태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은 기존의 성차별의식과 장애 혐오가 결합하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엄지공주로 널리 알려졌던 윤선아씨는 골형성부전증으로 인해 왜소한 체격과 작은 힘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유전공학기술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바 있다. 건강한 아들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여성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윤선아씨의 고백은 재생산의 역할과 여성성을 결부했던 모성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장애아를 낳은 여성은 건강한 자녀의 생산이라는 여성의 과업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장애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성공한 윤선아씨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며 장애에 대한 고정적 편견에 일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29) 가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 자궁 내에서 양수를 채취한 후, 양수에 포함되어 있는 태아로부터 탈락한 조직세포의 DNA와 양수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여 태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산전 검사법이다. 일정한 양의 양수가 태아를 둘러싼 후인 임신 15주 이후부터 20주 사이에 실시된다.

30) 태아와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융모막은 수정란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태아와 거의 유사한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다. 융모막융모생검은 이러한 융모막의 융모를 채취하여 세포유전학적 분석, DNA 분석 및 효소 분석을 하는 산전 검사법의 하나로 통상적으로는 임신 10~12주 사이에 실시된다. 양수검사보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반면, 태아가 유산될 위험성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을 향한 암묵적인 장애혐오를 조장하는데 기여하는 셈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사회에서 장애가 기술을 통해 개선되는 혜택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힘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활용이 장애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장애인협회가 기술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편리성, 자율성, 경제적 기회 등을 제공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들이 직면한 차별과 구조적 장벽을 더 강화하는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참조할 만하다. 의료기술과 장애의 만남이 기대하는 포스트휴먼적 “존재의 가변성과 유동성” (이 재준, 2022: 262)은 장애의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이자 동시에 현실을 사는 존재의 고통을 손쉽게 외면하는 계기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에는 장애인을 기술과 의학으로 교정하려는 정상성 규범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지는 목소리가 발 붙일 곳이 없다”(김 초엽, 2021: 84)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도구로서의 장애

장애인을 집단화하고 대상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미디어에 의해 종종 정치적으로 도구화 되기도 한다. 최근 미디어가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보도하는 과정은 어떻게 장애인들이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 대중들의 혐오감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동권 보장은 일찍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5)에 명기되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시민적 불평등을 야기할 때마다 각종 언론과 정치인들이 전국장애인연합을 비난하였고, 장애인 혐오 발언들도 급증했다. 주목할 것은 장애인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혐오감은 증폭된다는 점이다. 전국장애인연합이 지하철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각종 미디어의 미디어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뉴스 보도를 위해 장애를 정치적 도구화하였다. 대표적인 반정부성향의 미디어인 프레스안과 한계레는 각각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전장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전장연 약자 아니다’... 면담 사흘 앞 갈등 키우나” 등의 반정부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자료를 생산하였으며,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는 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과 손해를 겪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양쪽 진영의 적대감과 혐오감을 대상이 되어야 했다. 여당 측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이동권 시위가 현 정부에 치부나 부담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반 야당 측은 그것을 현 정부를 비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장애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진정성있는 협의를 하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자극한다. 약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싸우게 만드는 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김 승섭, 2023: 68).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좌파 성향의 언론으로 알려진 한겨레와 프레스안은 여당 측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장애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우파 언론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사건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사건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행동이 정치적 도구화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적이자 혐오대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장애혐오 담론에 대한 대응

미디어와 장애혐오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미디어의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입장과 정책상과 인식상의 차원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혐오를 양산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생산자로서의 미디어 집단의 책임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임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는 몸의 특성이나 질병으로 인식하도록 도구화 대상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장애에 대한 복합적 차원과 다양성을 드러내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유엔 소속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장애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고안하고 만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들에 대한 묘사와 그들이 미디어에 나타나는 빈도 수는 장애인의 사회적 대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함께, 미디어가 존엄과 존중을 가지고 장애인을 표현하는 것은 더 포용적이고 관대한 사회를 촉진하며 비차별적이고 동등한 기회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ILO, 2010)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미디어가 장애를 재현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적 비가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과 장애를 재현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를 대상화하는 대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는 중립적이고 비차별적 시각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장애혐오는 장애에 대한 직접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장애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 재현, 기술, 제도로부터 파생되어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가 시간의 축적과 내면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시간에 손쉽게 장애혐오적 시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혐오 담론의 매개가 되는 언어, 미디어, 게임, 의학기술, 국가제도 등에 대해 미시적인 공격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과 장애감수성의 함양이다. 감수성(sensitivity)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와 관련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장애담론은 지식권력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애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왜곡된 감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판적으로 경계하는 장애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장애감수성은 장애혐오 담론에 맞서기 위해 초월적 능력의,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장애인들을 해방시켜준다.

그러한 해방을 위해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온 장애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장애담론의 형성이 진작되어야 한다.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전문가와 대중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문화의 주체가 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장애를 바라보던 부정적인 시각을 전유하는 크립문화를 통해 응시와 지칭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긍심과 자기애를 통해 혐오에 맞설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통제된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관습과 담론을 통해 몸에 새겨진 '정상성'의 규범을 과감하게 날려버리며 급진적으로 존재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신들을 예측하는 지식/권력 관계에 대한 비분절적 지식으로 지배적인 지식에 맞서고, 관습이 부과하는 이미지를 초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장애혐오 담론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 장애인이 역량강화(empowerment)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얻으며 부정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크립문화가 장애인이라는 소수적 정체성과 범주화를 강화할 위험이 내재하는 만큼, 교차성을 통한 장애와 소수자성의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의 능력주의는 장애인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여성, 인종 등에도 작동하기에 차별과 혐오는 상호교차성을 지니게 된다. 차별과 혐오를 승인하는 상호교차성과 외국인 장애인, 여성 장애인, 중증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중층적

억압에 대한 이해는 생명정치와 권력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하는 데 이론적, 실천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소수자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관습적 사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적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장애에 관련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는 인류가 당연시해 온 인간, 장애, 여성, 노동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낸시 허시먼은 장애를 만들어 내는 장벽이 되는 사유로, “자유는 능력을 전제한다”는 공리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를 문제시한다.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론에 천착해 온 이들은 ‘시민권’이나 ‘인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성’과 ‘능력’ 같은 가치들에 의존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아네일/허시먼, 2023: 159). 따라서, 장애혐오에 대한 대응은 장애에 대한 재고만이 아닌, 노동능력, 인간,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한다. 노동능력의 상실물로 등급화되고 무력화된 장애인들에게 노동 개념 자체의 재고는 새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산술화되는 노동에서 벗어나는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등의 장애인들의 집회와 시위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생산자가 된다. 그마저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존적 존재로서 비장애인을 응시하며, 비장애인의 윤리적 부담과 책임의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윤리적 사회가 작동하도록 기여한다. 이와 같은 노동의 재정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다른 관계를 생성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제안을 함축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성적, 지적 능력에 기반하여 인간을 정의해온 합리주의적 사유는 정상성 이데올로기와 능력주의를 통해 장애혐오를 야기해 왔으므로, 우리는 의존성과 취약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의존성을 위한 기본적 명제로 삼아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위계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장애 혹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자아가 아닌 타자를 통해 자신의 주체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타자로서의 장애는 나의 주체형성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존성과 취약성은 사람들의 공통점에 기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공동체의 책무로 규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기존 관점의 재정립이 가능해질 때만이 우리는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혐오를 재고할 수 있게 된다.

< 인용문헌 >

김 승섭, “이동, 낙인, 정치, 합리성,” 「누가 죄인인가?」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1년: 지하철행동과 시민-언론의 역할 좌담회 자료집」, (2023).

김 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 진경, 강 진영 옮김)(서울: 후마니타스, 2002).

김 현아,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과주: 돌베개, 2023).

김 초엽/김 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과주: 사계절 출판사, 2021).

문 채영/심 재웅, “게임이용이 장애인에 대한 양가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4권 3호(2023).

바버라 아네일/낸시 허시먼,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 (김 도현 옮김)(서울: 후마니타스, 2023).
원제는 Disabili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브라운, 웬디,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이 승철 옮김)(서울: 갈무리, 2010). 원제는
The Power of Tolerance: A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셰익스피어, 톰, 「장애와 유전자 정치」 (김 도현 옮김)(서울: 그린비, 2021). 원제는 Genetic
Politics From Eugenics to Genome (New York: New Clarion Press, 2002).

이 재준, “사이베슬론에서 포스트휴먼 장애의 특성,” 「인문과학연구」, 44권 74호(2022).

엘리스, 케이트/제라드 고긴, 「장애와 미디어」 (우 형진/우 충완 옮김)(서울: 우리나비,
2020). 원제는 Disability & The Media (Berlin: Springer Nature Limited, 2015).

조 영준, “장애를 딛고 일어난 게임 속 캐릭터들,” 「게임동아」 (서울:아이티동아, 2020).

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유 민석 옮김)(일산: 알렙, 2016). 원제는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2021).

Barnes, Colin, Disabling Imagery and the Media: An Exploration of the Principles for
Media Representations of Disabled People (Halifax: The First in a Series of
Reports, 1992).

Davis, Lennard.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New York: Verso, 199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edia Guidelines for the Portrayal of Disability* (Geneva: ILO, 2010).

Mitchell, David and Snyder, Sharon,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Nussbaum, Martha, “Objectific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4권 4호(1995년 8월 20일).

Oliver, Michael,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Shakespeare, Tom. 1997. “Cultural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Dustbins for Disavowal?,” *Disability & Society*, 9권 3호(1994년 1월 30일).

Shew, Ashley, “Ableism, Technoableism, and Future AI,” *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39권 1호(2020년 3월 15일).

Zola, Irving Kenneth, “Depictions of Disability—Metaphor, Message, and Medium in the Media: A Research and Political Agenda,” *The Social Science Journal*, 22권 4호(1985).

< 뉴스 기사 >

<<중앙일보>>. 2016.9.22. [로봇입고 성큼성큼... 하반신 마비 20년 만의 기적].

<<프레시안>>. 2023.7.26.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2614132817655?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검색일: 2023. 10. 21)

<<한겨레>>. 2022.6.20. [“전장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_general/1047743.html(검색일: 2023. 10. 21).

———. 2023.1.30. [오세훈 “전장연 약자 아니다” ... 먼담 사흘 앞 갈등 키우나].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7502.html>(검색일: 2023. 10.21).

2부

장애인 혐오 예방과 대응, 사회적 책임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장애인 혐오 예방과 대응, 사회적 책임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발행일 2023년 12월 21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02) 2125-9961 **FAX** (02) 2125-0924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 2278-1990 **FAX** (02) 2278-1992

ISBN 978-89-6114-998-3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
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과 의견 공유장